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8 선고 2019가단5073464 판결 [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성환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구자혜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부영

변론 종결 2019. 10. 18.

판결 선고 2019. 11. 8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

값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소장 기재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9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)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1999. 9. 작성된 D 주식회사(이하 '소외 회사'라고 한다)의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증자 후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주식 9,000주(이하 '이 사건 주식'이라고 한다)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. 나. 그 후 소외 회사는 용인세무서장에게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, 그 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피고 C의 처(妻)인 피고 B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었다. 다. 소외 회사 발행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갑 제3호증, 갑 제5호증의 1, 2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주식 양도대금 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피고 C이 2010년 피고 B 명의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는데,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, 다만 이후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들과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 10,000원에 상당하는 9,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.

(2) 판단

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식에

관한 주식양수도계약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나.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

(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피고들이 원고와 합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피고 B명으로 명의개서를 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,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하여 9,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.

(2) 판단

(가) 상법 제335조 제2항에서 정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, 이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(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). 또한,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(제337조 제1항)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,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,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(대법원 2018. 10. 12.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).
(나)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가정하더라도,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이 피고들에게 양도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.

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고 가정할 경우 주권발행 전 주식인 이 사건주식이 피고들에게 양도되려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의사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, 원고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없다는 것이므로,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. 또한, 설령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피고B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,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주주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

무권리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될 수는 없다.

따라서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되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고흥석